

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

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5일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

1. 채용예정 분야 및 담당업무 (1개 분야, 총 2명)

가. 채용예정분야

지원코드	채용 분야	채용인원	근무예정부서(근무지)
인턴01	고용분야	2명	울산고용센터(울산광역시 남구)

나. 주요 업무 내용

지원코드	채용 분야	담당 업무
인턴01	고용분야	○ 다양한 국정경험 기회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 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공동업무, 현장활동 지원 등 업무 수행 ○ 실업급여,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센터 업무지원

2.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

가. 응시자격 요건

①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19세이상~34세이하)의 연령*에 해당하는 자

* 공고 최종일 기준

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「병역법」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

▶ 군복무기간 1년미만 : 1세 / 1년이상 ~ 2년 미만 : 2세 / 2년이상 : 3세 연장

② (학력, 전공, 성별) 무관

③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

-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
(정규모집 미달로 인한 추가 모집 공고에서는 동 조건 삭제 가능)
-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(2회)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
 - ※ 단, '23~'24년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회 더 참여기회 부여
 - ※ 참여횟수 확인을 위해 기존 참여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, 누락·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 - ※ 고용보험 이력 중 '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'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경력증명서 등)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경우
-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※ 채용결격사유

고용노동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지침 제25조(채용결격사유)

-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.

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우대요건 *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

○ (가점) 장애인, 사회적 약자 등 채용 시 가점제(3~10점 내외) 운영

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고, 허위 기재 시 합격 취소

구분		부가 점수
법정 가점	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▲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▲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▲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	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% 또는 10%
사회 형평 가점 (필요시)	▲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	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%
	▲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▲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▲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▲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	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%

- (대상)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*(해당자에 한함)
 - * 저소득 해당자의 경우 필수 제출
 -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- * 장애인 우대 관련 필수 제출

3. 시험 방법

가. 서류전형

-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*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
 - * 서류전형 기준 : 1. 인턴지원서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6. 8. 19.(수), 아래 사이트에 게재
 -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
 - 고용노동부 울산지청(<http://www.moel.go.kr/local/ulsan/index.do>)
 - 나라일터(www.gojob.go.kr)

나.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‘정책제안서’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정책제안서 주제는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지정한 주제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
 - * 정책제안서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

4. 시험 일정

가. 시험공고: 2026. 8. 5.(수)

나. 원서접수: 2026. 8. 12.(수) 9:00 ~ 8. 14.(금) 18:00까지

다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: 2026. 8. 19.(수)

라. 서류전형 합격자 정책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

- 2026. 8. 19.(목) 9:00 ~ 8. 20.(목) 18:00

마. 면접시험일: 2026. 8. 25.(화)

※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
별도 개별통보 예정

바. 최종 합격자 발표일: 2026. 8. 27.(목)

※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홈페이지,
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, 나라일터(www.gojob.go.kr)에 공고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, 포기,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
필요한 경우,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
결정할 수 있음

5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

가. 접수 방법

○ 접수기간 : 2026. 8. 12.(수) 9:00 ~ 2026. 8. 14.(금) 18:00

○ 접수방법 : 청년인재DB 내 '청년인턴 채용' 공고에 신청

* 신청 전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에 가입 필요

나. 제출 서류

○ 응시원서, 청년인턴 지원서 각 1부(필수 제출)

- 정책제안서 1부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면접전형 전에 필수제출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(필수 제출)
-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(필수 제출)

<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>

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,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.

- 정책제안서(필수 제출)
-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(필수 제출)
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*(해당자에 한함)
 - * 저소득 구분모집의 경우 필수 제출
-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- *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필수 제출

6. 근무조건

- 가. (신분)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
- 나. (계약기간) 2026. 9. 1. ~ 2026. 12. 31.
- 다. (보 수) 월 2,156,880원(정액급식비 160,000원 포함)
- 라. (근무시간) 주 5일 40시간
- 마. (후생복지)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7. 유의 사항

-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관과로(☎052-228-3812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